

발간등록번호

11-1210000-100018-01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2025. 12.



국세청 | 원천세과

본 안내자료에서 설명드린 비과세·감면 외에 다가오는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경로]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개인·법인 신고안내 → 연말정산
→ **연말정산 종합안내**

머 리 말

국세청에서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세정지원 제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첨단산업 분야의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인재를 양성·활용·관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치열한 글로벌 경제상황에서 한 발 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내·외국인을 막론한 우수 인재 확보가 필수적이며, 세제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첨단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우수인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민 경제에 이바지 하기 위해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이 2025년 10월 1일 시행되었고,
- 이를 반영하여 우리 세법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더하여 2025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대상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 인재가 추가되는 등 세정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에 도움이 되는 근로소득세 분야의 각종 비과세·감면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니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우수인재 확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2월

법인납세국장

심 욱 기

CONTENTS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 I**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1
- II**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15
- III**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23
- IV**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규정 ... 33
- V**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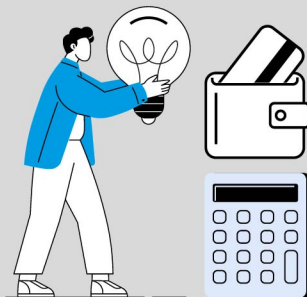




I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I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도입 목적

- '12년 중소기업 인력지원 및 청년 등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도입하여 매년 지원범위 확대(조특법§30)

□ 제도 개요

- **(제도 요약)** 청년 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를 연 200만 원 한도로 감면

* 청년 외 근로자는 3년간 70%를 200만 원 한도로 감면

○ **(감면대상자)**

대 상	요 건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34세 이하인 자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등
경력단절 근로자	①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 ②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 ③ 퇴직한 날부터 2~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 (감면율 및 한도)

대상자	소득발생 시점	감면율	한도금액
청년	'23.1.1.~'26.12.31.	90%	200만원
60세 이상자·장애인	'23.1.1.~'26.12.31.	70%	
경력단절 근로자*	'25.3.14.~'26.12.31.	70%	

* “경력단절 여성” → “경력단절 근로자”로 범위 확대('25.3.14.)

□ 감면신청

- (감면 절차) 중소기업에 취업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요건 판단 후 관할세무서에 감면명세서를 제출

※ 퇴직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

□ 상세 설명자료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30, 조특령 §27)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으로서 일정한 중소기업체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청년의 경우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함)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이 경우 소득세 감면기간은 소득세를 감면(200만원을 한도로 함)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 또는 합병·분할·사업양도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체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에 관계없이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한다.

○ 감면대상 근로자(외국인 포함)

-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한도 : 6년)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
 -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 「군인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 「병역법」 제36조에 따른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은 병역을 이행한 자로 보지 않음
 -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고, 취업 시 연령이 29세(34세) 이하인 경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 ② 60세 이상의 사람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
- ③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④ 경력단절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 단절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하였을 것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조특령 §26의8 ⑫)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혼인, 퇴직한 날부터 2년 이내 임신 또는 난임 시술 진단, 퇴직일 당시 임신, 퇴직일 당시 8세 이하 자녀 육아, 퇴직일 당시 초·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교육, 퇴직일 당시 장애인 자녀 돌봄, 퇴직일 당시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7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또는 장애인을 동거봉양
- 해당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사례

【문】 2022.4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024.4월 퇴사하고 1년간 휴직 후 2025.4월 B중소기업으로 재취업한 경우 감면 대상기간은?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한 경우)

답 취업일로부터 5년간(2022.4월~2027.4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문】 2024.1월 A중소기업에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여 2025.2월 B중소기업에 재취업하여 감면받은 경우 (이전 회사에 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답 재취업일로부터 5년간(2025.2월~2030.2월)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감면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 ①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 ②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와 그 배우자
 - ③ ②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속·비속(그 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 ④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감면대상 중소기업체

구 분	업 종
감면대상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②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③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④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 ⑤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제외) ⑥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⑦ 부동산업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⑧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⑨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⑩ 기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25.2.28.이후 취업하는 자부터 수의업은 제외 ⑪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⑫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24.2.29.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컴퓨터 학원 포함) ⑬ 사회복지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⑭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감면제외 (예시)	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관련, 회계·세무관련 서비스업 등) ② 보건업(병원, 의원 등) ③ 금융 및 보험업 ④ 유원지 및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⑤ 교육서비스업(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제외) ⑥ 기타 개인 서비스업

 **참고**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 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감면 제외

○ 감면 신청

-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하려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신청 할 수 있다.
※ 감면 신청기한 경과 후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원천-428, 2012.8.17.)

- (원천징수의무자) 근로자로부터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 그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신청서를 제출받은 달의 다음 달부터 「조특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수 있다.
-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의 명단을 받은 경우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원천 징수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부적격 감면 사후관리

- (계속 근로자) 감면 신청을 한 근로자가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실을 통지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이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당초 원천징수하였어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월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에 더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 (퇴직 근로자)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사실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부적격 대상 퇴직자 명세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에 의해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감면으로 과소징수된 금액에 100분의 105를 곱한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소득세로 즉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감면세액 계산 등

① 감면세액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감면소득)과 그 외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text{종합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근로소득금액}}{\text{종합소득금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총급여액}}{\text{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 \times \text{감면율}$$

② 감면세액 적용 시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감면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감면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를 포함)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근로소득세액공제액으로 한다.

$$\text{세액공제액} = \text{「소득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근로소득세액공제액} \times (1 - \text{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참고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홈택스(나의 홈택스) 조회 서비스 추가
 - 근로자 : '20. 1월부터 신청내역 조회 가능·원천징수의무자 : '20. 4월부터 명세서 조회 가능

 예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사유가 발생한 연도(2020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득세 감면적용기간은 2023.12.31.까지임(서면-2024-원천-0150, 2024.02.2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신고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는 것이므로, 해당 기업의 주된 사업이 도소매업에 해당한다면 본·지점 구분 없이 소속 근로자는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4-원천-0618, 2024.05.03.)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며,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유예 제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4-원천-1456, 2024.05.09.)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중소기업의 적용기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말일에서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임(서면-2025-원천-0376, 2025.08.07.)

□ 중소기업기본법 평균매출액 업종별 규모 기준(별표1) <개정 '25. 9. 1.>

○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할 것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규모 기준
1.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1차 금속 제조업, 3.전기장비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800억원 이하
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7.식품품 제조업, 8.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9.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11.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3.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4.건설업, 15.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등 1,200억원 이하
16.농업, 임업 및 어업, 17.광업, 18.담배 제조업 19.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20.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21.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2.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3.기타 제품 제조업, 2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25.수도업, 26.운수 및 창고업, 27.정보통신업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28.음료 제조업, 29.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0.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1.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32.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34.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35.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6.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37.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8.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9.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협회 및 단체는 제외)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40.숙박 및 음식점업, 41.금융 및 보험업, 42.부동산업, 43.임대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 44.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2호 및 제13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발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6.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신청인	① 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소	④ 취업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청년(15세 ~34세) <input type="checkbox"/> 60세 이상 사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근로자

2. 취업 시 연령	
⑤ 중소기업에 취업한 날 연령	년 월 일 (취업일: , 생년월일:)
⑥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년 월 일 (입대일·소집일: , 전역일·소집해제일:)
⑦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⑤ - ⑥)	년 월 일

* ⑥ 및 ⑦은 '청년' 만 작성합니다.

3. 감면기간	
⑧ 시작일*: 년 월 일 * 2012. 1. 1. 이후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	⑨ 종료일*: 년 월 일 * 시작일부터 3년(청년 5년)이 되는 날(병역이행 후 1년 이내 동일 중소기업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을 말합니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귀하

첨부서류	1. 병역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장애인등록증(수첩, 복지카드) 사본 1부 3.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1부(「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적용받은 청년 등이 다른 중소기업체에 취업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1. 감면신청서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2.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를 말합니다.
3. 2013. 12. 31. 이전에 취업한 청년이 해당 중소기업체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경우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10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2014.1.1.부터 2015.12.31. 까지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재취업자는 소득세 감면기간 종료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5. 2016.1.1. 이후 중소기업체에 최초 취업자는 취업일부터 3년간 해당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소득세 7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6. 청년의 경우 2018년 이후 귀속 근로소득부터는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이 적용되며, 근로소득의 소득세 90%를 감면(한도 200만원)받을 수 있습니다.
7. 중소기업체 재취업자의 소득세 감면기간 ⑧ 시작일과 ⑨ 종료일은 최초 감면신청서상 감면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용합니다.
8. 경력단절 근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를 말합니다(동종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다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및 가족돌봄의 사유로 퇴직하고 2년 이상 15년 이내의 기간이 경과한 후 동종업종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근로자로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경우).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5. 6. 30.>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주업종코드

2. 감면 적용 대상자 명단

성 명	주민 등록번호	취업일	취업자 유형	중소기업 취업 시 연령	병역근무기간 (6년을 한도로 함)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	감면기간	
							시작일	종료일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에 따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취업자 유형"은 '청년', '60세 이상 사람',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 "병역근무기간"과 "병역근무기간 차감 후 연령"은 취업자 유형이 '청년'인 경우 적습니다.
- "감면기간"란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의 ㉔·㉕란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적습니다.
- "주업종코드"란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주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감면대상입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증질지 80g/㎡]



II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II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도입 목적

- 국외에서 거주하면서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 지원을 통한 **우수 인력 유치**(조특법§18조의3)

□ 제도 개요

- **(제도 요약)**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의 연구기관** 등에 '28.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10년간 소득세의 50%를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② 취업일 또는 소득세 최초 감면일 직전 5년간 국외에서 거주하였을 것
- ③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④ 취업한 기관과 경영지배관계 등이 있지 않을 것
- ⑤ 해당과제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
- ⑥ 취업한 기관에서 연구원(행정사무 담당은 제외)으로 근무할 것

- **(취업 연구기관)**

-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 ②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대학부설연구기관 등

□ 감면신청

-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5 「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상세 설명자료

✓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조특법 §18의3)

-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연구기관 등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일(2028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참고

※ 내국인 우수 인력 특례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의3)

종 전	개 정
○ 과세연도 종료일(12.31.)기준으로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근로기간 중 내국인 우수인력이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범위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일 것
- 기관 또는 부서에 취업한 날 또는 소득세를 최초로 감면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 동안 국외에서 거주했을 것. 이 경우 1개 과세기간에 183일 이상 국외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일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 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4항 제1호나목의 요건은 적용 배제함
-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2) 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그 부설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국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

3)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4)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II.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1.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전화번호:)
2. 국외 거주기간	④ 국외거주시작일 또는 시작 과세기간	⑤ 국외거주종료일 또는 종료 과세기간
	⑥ 업 태	⑦ 업 태(종목)
3. 원천징수 의무자	⑧ 소재지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감면기간	
	시작일 : 년 월 일 종료일 : 년 월 일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감면 가능)	
	⑪ 연구기관 유형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박사학위증명서 2.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등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3호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작성방법

1.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신청은 취업한 날 또는 최초 감면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5개 과세기간동안 국외에서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연구기관 유형"은 소득자가 국내에 취업한 연구기관 등이 해당하는 항목을 표시합니다.
3. "감면기간"란에는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을 시작일로 기재하고 시작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을 종료일로 기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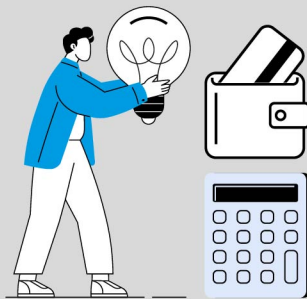
210mm× 297mm[백상지 80g/㎡]



III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III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도입 목적

- 국내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의 전문기술인력 유치·지원**하기 위해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도입(조특법 §18)

□ 제도 개요

- **(제도 요약)**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다만, 일부 외국인기술자*는 3년간 소득세 70% 감면하고, 2년간 50% 감면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16에 따른 특화선도기업 등에서 근무하는 자('22.12.31.이전 최초 근로제공자로 한정)

○ (감면대상자)

1.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에 의해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계약금액이 30만 달러 이상인 계약
2.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서 근로 제공기업과 친족·경영지배관계가 없는 자
 - ① 자연계·이공계·의학계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 ② 국외 대학 등에서 5년* 이상 연구개발·기술개발 경험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박사학위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 ③ 기업부설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근무 또는 교수 체류자격 등이 있는 자
3.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25년 추가)

○ (국외대학 및 연구기관)

- ①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 ②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 등

□ 감면신청

- (신청서 제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

*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상세 설명자료

✓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18)

-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써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6.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특화선도기업등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참고

※ 외국인기술자 특례배제 요건 보완(조특령 §16)

종 전	개 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으로 외국인 기술자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기간 중 외국인 기술자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적용 배제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1) 감면대상 외국인기술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자연계·이공계·의학계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일 것
 -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서 5년(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취득전 경력을 포함하여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을 것
 -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근로를 제공하는 기업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지 않을 것. 다만, 경영지배관계에 있는지를 판단할 때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제1호 나목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 각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연구원(행정 사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으로 근무하는 사람일 것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제14호의 교수(E-1)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연구 개발특구 또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소재한 제46조의3제2항 제4호의 기관에서 전문 분야의 교육 또는 지도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

2) 감면세액 계산

$$\text{감면세액} = \frac{\text{근로소득}}{\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times 50\% (\text{부품등은 최초 3년 70\%})$$

3) 제출서류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 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규

-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문언 그대로 당해 외국인 기술자가 입국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 경과 후 청구법인에 고용된 외국인 기술자는 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조심2012부5132, 2013.04.19.)
- 외국인기술자로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은 병역의무 이행 등을 위해 대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때가 아닌, 외국인기술자의 자격으로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2012중3172, 2013.03.21.)
-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외국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기술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연구기관 등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09.12.31.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 로부터 연속하여 5년간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법규소득2012-229, 2012.06.19.)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제1항은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외국법인 국내지점에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는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조심2011서1801, 2012.03.27.)
-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것임(국제세원 -577, 2011.12.22.)
-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면제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국제세원 -529, 2010.11.26.)
- 2009.12.31. 이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8 제2항에 의한 소득세 면제를 받아 오던 외국인기술자의 출국 후 재입국 등에 대한 소득세 면제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국제세원-92, 2010.03.09.)
- 외국인기술자가 영업, 기획 등 해당 기술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서면 2팀-994, 2008.05.21, 국제세원-505, 2009.03.11.)

- 대형선박 및 해양플랜트설비 제작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46012-11692, 2003.09.23.)
- 금융업 영위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는 소득세 면제대상이 아님(서이 46017-10629, 2001.11.29)
 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은행은 조특령 제16조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내국은행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 것임.
- 일정한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소득 범위(국일46017-692, 1997.11.20)
 비영리연구기관에 근무하는 외국인 연구원의 경우 근로소득세는 면제되나 자문료 등 독립적 연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소득세 면제 안됨
- 임원인 외국인기술자의 감면대상여부(제도 46017-11884, 2001.07.04)
 외국인기술자 범위에는 임원 또는 사용인 여부를 불문하나 자기가 습득한 산업기술을 직접 제공하는 자에 한함
- 감면기간 중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여부(국일46017-765, 1997.12.24)
 외국인기술자가 면제기간 도중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기술자가 내국인 지위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은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하도급자 소속의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 감면여부(국조22601-778, 1991.06.14)
 ‘과학기술부장관이 승인한 기술용역도입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업자’에 소속되어 있는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당초 기술용역제공자의 기술자가 받은 대가와 같이 면세 대상이 된다.
-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면제신청서 신청기간 경과 후 제출시 감면여부(국이 46523-207, 1994.04.16)
 기간을 경과하여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당해 소득이 면제대상임이 확인되면 면제가능하며, 원천징수 과오납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액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임
- 외국인기술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국제세원-529, 2010.11.26)
 외국인기술자가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가를 지급받을 때 일부는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일부는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국내

용역수행에 따른 대가에 한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조특법상 면제대상 근로 소득에 해당함

- 외국인기술자 감면 적용시 최초 근로제공일의 의미(국제세원-137, 2012.03.21)
소득세를 면제받았던 외국인기술자가 재입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최초로 국내에 근로를 제공한 날을 말하는 것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 3. 21.)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소득자	① 성 명		
	② 주 소 (전화번호:)		
	③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④ 국 적
⑤ 입국 목적			⑥ 입국 연월일
입국 후의 근무처	⑦ 업 태		⑧ 업 태(종목)
	⑨ 주 소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성명		
⑫ 근로계약기간 또는 체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⑬ 근로소득세 감면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		
⑭ 연구기관 유형 (근로소득세 감면근거가 영 제16조제1항제2호인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1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2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4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5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6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7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2항제8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청합니다.			
신 청 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서류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가. 학위증명서 나. 국외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5년(박사 학위 소지자의 경우 2년) 이상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경험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제5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증명서 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 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면을 받는 경우 가. 우수 해외인재 확인서(「우수 해외인재 기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		수수료 없 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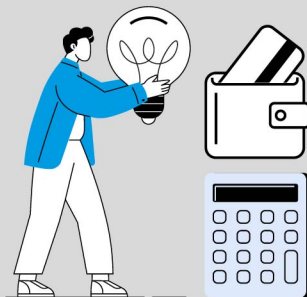
210mm × 297mm [백상지 80g/㎡]



IV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규정



IV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규정

□ 도입 목적

- 우수인력의 벤처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의 일환으로 도입(조특법 §16의2,3,4)

□ 제도 개요

- **(비과세 특례)** 벤처기업 임원 등이 **요건¹⁾**을 갖춘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중 **일정 금액²⁾**을 비과세 혜택 부여
 -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 「상법」 §340의2 또는 §542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2) 인별 연간 2억원 이내 금액,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 5억원 이하
- **(납부 특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회사에게 납부특례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5년간 분할 납부 특례** 부여
 - * 비과세 되는 금액을 제외
- **(과세 특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기타소득으로 과세**하나,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이익은 근로·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특례 부여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 신청절차

- **(비과세 특례)** 회사는 “비과세특례적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분할납부,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제외)
- **(납부 특례)** 벤처기업 임원 등은 “특례적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회사는 “특례적용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과세 특례)** 양도소득세 신고 시 회사가 발급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상세 설명자료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등(조특법 §16의2·3·4)

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조특법 §16의2)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 중 연간 2억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벤처기업별 총누적금액은 5억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참고

※ 연간 비과세 한도 및 기준

기 간	기준시점	한 도
'18.1.1.~'19.12.31.	부여기준	2천만원
'20.1.1.~'21.12.31.	부여기준	3천만원
'22.1.1.~'22.12.31.	행사기준	5천만원
'23.1.1.~	행사기준	2억원*

* '23.1.1.이후 행사분부터 벤처기업별 누적한도 5억원 신설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특법 §16의3)

벤처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2027.12.31.까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벤처기업 임원 등으로서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조특법 §16의2에 따라 비과세 되는 금액은 제외)에 대하여 벤처기업 임원 등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납부특례세액을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 받는 경우에는 납부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 - 실제 매수가액(행사가격)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6의4)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퇴직 후 행사하는 경우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적용을 신청(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주1)}를 개설하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전일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에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이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 근로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를 과세한다.

〈주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 요건(조특법 시행령 제14조의4 ⑩)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계좌를 말한다
 1. 벤처기업 임직원 본인의 명의로 개설할 것
 2. 금융투자업자가 벤처기업 임직원의 다른 매매거래계좌와 구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의 명칭으로 별도로 개설·관리할 것
 3.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4. 계좌 개설 이후 1개월 내 주식이 입고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계좌를 폐쇄하는 내용으로 사전에 약정할 것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요건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갖출 것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매수가액·대상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제1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 3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해당 법인에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일 것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해당 주식의 보유를 원인으로 해당 벤처기업의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을 포함)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조특법 제16조2의 비과세소득 제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ext{※ 양도소득금액} = A - B - (C - D)$$

- A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식의 양도가액
- B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실제 매수가액과 적격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의 시가 중 큰 금액
- C : 제16조2에 따라 비과세되는 금액
- D : 시가 이하 발행이익에 대하여 제16조2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은 금액

- 벤처기업 임직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모든 이익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며, 이 경우 소득의 귀속시기는 다음과 같다.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아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증여일 또는 처분일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파산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 합병·분할 등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식을 처분하고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의 신주를 지급받는 경우

-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행사가액이 5억원을 초과한 날
 - 전용계좌를 통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 외의 주식을 최초로 거래한 날
- 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 경우(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후 조특법 제16조의4제5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경우를 포함)에는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약정된 주식매수시기에 약정된 주식의 매수가액과 시가의 차액을 해당 벤처기업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벤처기업 임직원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특례적용신청서에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 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소득과세 표준을 신고할 때 벤처기업이 발급하는 특례신청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례적용신청서를 제출받은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지급하는 주식을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로 입고하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지급명세서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투자업자는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거래현황신고서를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주총회 결의가 있는 날 현재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특례를 제외한다.
 -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자
 -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자
 -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
 - 제3호의 주주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예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이를 행사할 때 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법인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서면-2021-법령해석소독-3480, 2021.08.31.)
-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에 따라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은 후 해당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이 소각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당시의 시가를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사전-2023-법규소독-0481, 2023.09.21.)
-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2023.1.1. 이후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된 것)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에 규정된 각각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사전-2023 -법규소독-0254, 2023.10.19.)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개정 2025. 3. 21.>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적용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 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2. 과세특례 적용대상명세서

① 성명	② 직책	③ 주민등록번호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⑤ 주식매수선택 권 행사일 현재 1주당 시가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⑦ 행사이익 누적금액	
						⑧ 연간 누적금액	⑨ 총 누적금액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천징수의무자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작성방법

- 이 서식은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자에 대해 작성합니다.
- "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수량 × (행사일의 1주당 시가 - 1주당 실제 매수가액)"으로 계산된 금액을 적습니다.
- "⑧ 연간 누적금액"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연도의 연간 행사이익 누적금액을 적습니다.
- "⑨ 총 누적금액"란: "⑧ 연간 누적금액"을 포함한 총 누적금액을 적습니다.

210mm × 297mm [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4서식] (개정 2019. 3. 20.)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

1. 원천징수의무자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장 소 재 지	(전화번호:)		

2. 납부특례 적용대상 명세서

성 명	직 책	주민등록번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행사이익	납부특례신청내용	
					원천징수 제외	분할납부
					[]	[]
					[]	[]
					[]	[]
					[]	[]
					[]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 특례적용대상명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원천징수의무자

세무서장 귀하

작성 방법

1.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적용신청서의 행사이익을 적습니다.
2. 납부특례 신청내용은 신청한 납부특례 방법에 따라 표시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5서식] (개정 2025. 3. 21.)

특례적용신청서

1. 신청인 및 원천징수 의무자 현황

신청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벤처기업 현황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직책		사업장 소재지	
주식매수선택권전용계좌		벤처기업 확인내역	번호
금융투자업자	계좌번호		평가기관
			확인일자
유효기간			
자회사 임직원 여부		[]	
자회사의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2. 해당 연도에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	① 행사한 수량	② 1주당 행사가액	③ 행사일의 1주당 시가	④ 행사이익 [①×(③-②)]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	⑥과세특례 적용(④-⑤)

3. 적격매수선택권에 관한 사항

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보유 여부		적격 여부
나.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해당 여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 여부	최대 주주 여부 적격 여부
다.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 초과 여부	본인의 해당 여부	10% 초과자와 특수관계 여부 적격 여부

4. 과세특례 신청내용

[] 종합소득세 과세 제외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주식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벤처기업 귀하

첨부 서류	주식매수선택권 전용계좌개설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받는 대신 벤처기업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려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2. 벤처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이 제출하는 경우 자회사 임직원 여부에 체크[√] 후 해당 자회사의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3. "벤처기업 확인내역"란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에 기재된 내용을 적습니다.
4. ⑤시가 이하 발행이익은 행사한 수량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당시 1주당 시가와 1주당 행사가액의 차이를 곱한 값을 말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10서식] (개정 2025. 3. 21.)

특례신청확인서

관리번호	처리기간 즉시	
1. 주식매수 선택권부여 벤처기업	① 법인명 또는 상호	② 사업자번호
	③ 벤처기업 확인번호	④ 벤처기업 확인일(유효기간) 년 월 일 (~)
	⑤ 주소	
	⑥ 총 발행주식수	⑦ 액면가액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정관 내용

부여 주식의 종류	부여 주식의 총수 발행주식 총수의 () %
-----------	--------------------------

행사기간

3. 주주총회 결의 내용

연번	성명 (명칭)	생년월일	자격	부여방법	행사가격	행사기간	주식수
		입사년월일					
합계							

※ 부여주식의 종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4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첨부 서류	없 음	수수료 없음
-------	-----	--------



V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V

직무발명 보상금 비과세

□ 도입 목적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수령하는 일정금액*의 직무발명보상금을 비과세로 규정하여 기술개발 유인 제고(소법§12 3호 어목)

* 비과세 한도 : ('18년 이전) 300만 원 → ('19~ '23년) 500만 원 → ('24년~) 700만 원

□ 비과세 대상(연 700만 원)

- (직무발명) 관련 법령에 따라 종업원 등이 받는 보상금

※ 발명진흥법 §2조의2【정의】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 (산학협력단)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제외 대상

- 보상금을 지급한 사용자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 사용자 등이 개인인 경우 :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에 있는 자
 - 사용자 등이 법인인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

* 해당 지배주주 등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 상세 설명자료

✓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법 §20)

-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

✓ 비과세에 해당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소법 §12 3호)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으로서 연 7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종업원 등이 같은 호에 따른 사용자 등으로부터 받는 보상금
 - 대학의 교직원 또는 대학과 고용관계가 있는 학생이 소속 대학에 설치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으로부터 같은 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받는 보상금

 예규

- 재직 중인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진흥법」 제15조제7항에 따라 국가가 그 권리를 승계하고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 2020-법령해석소득-4437, 2020.12.31.)
- 종업원 등이 재직 중의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에 따른 보상금(이하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동일한 사용자와 다시 근로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서면-2022-법규소득-1444, 2023.6.8.)
-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5, 2023.8.9.)
-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어목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을 퇴직 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직무발명보상금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2호 다목에서 정하는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에 따른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서면-2023-법규국조-0122, 2023.10.18.)



이 책자의 내용은
**2025년 12월 기준의 세법 내용 및 제도 등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입니다.**

이 책 발간 이후 세법령 및 제도, 서식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오니 실무 적용 시
반드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 우수인력 확보 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제도 안내**

- ✓ 발행일자 : 2025년 12월
- ✓ 발 행 처 : 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 ✓ 집필·편집 : 원천세과장 **정헌미**
행정사무관 **홍성훈**
국세조사관 **이지연**
국세조사관 **백신기**